

| | | | |
|-----|-----|-------|--|
| 설계자 | 확인자 | | |
| | | 설계년월일 | |

필리핀 디디피오 수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

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과업지시서..... | 1 |
| 1. 개요..... | 1 |
| 2. 과업기간..... | 1 |
| 3. 과업내용..... | 1 |
| 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 | 8 |
| 5. 과업수행 방법..... | 10 |
| 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 | 11 |
| 7. 보안대책..... | 12 |
| II. 예정공정표..... | 14 |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필리핀 디디피오 수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

□ 과업목적

- 동 사업은 필리핀 국가재생에너지계획(NREP, '21.2)의 재생에너지 점유율 확대 목표('30년까지 총 발전량의 37%, '40년까지 56%)에 부합하는 사업임
- '20. 10월 이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승인 중단, '24년 말람파야 가스전 고갈 전망에 따른 가스 발전소 출력 조정 등 화력발전소 운영 불안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
- 인근 사례 및 필리핀 에너지정책 감안 시, 설계 목표요금(5.84Php/KWh)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 체결('22년 기준, 5.90Php/KWh)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 본 과업에서는 사업환경 분석, 사업구조 및 기술/재무적 타당성 분석,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하는 사업 타당성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, 필리핀 정부 협상, 내부투자자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80일

3. 과업내용

가. 기술분야

1) 자료 수집 및 기초현황 조사

□ 사업환경 분석

- 사업개요(사업규모, 입지, 사업기간 등), 사업환경(정부정책, 인구, 도시 등)에 대한 전반적 분석
 - 관련법령/기준,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,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등
 - 필리핀 전력망 조사 및 송배전망 최적 접속방안 검토
 - 필리핀 PPP 사업추진절차 및 관련 관계기관(인허가기관 포함)

- 소수력발전 시장현황 및 정부 인센티브 혜택 및 제약사항
- 선행 유사사업 사례조사
- 사업대상지 주변 인프라 현황 및 향후 계획 조사
- 사업부지 접근로 및 자재/장비 운송경로 검토

2) 기술 검토

□ 기존 수행 보고서(DED 등) 검토

- 현지 사업권자가 수행한 보고서 세부 검토 수행
 - 주요 시설계획 및 기술사항의 적정성 평가

□ 현장조사(기존 DED 자료 분석 후 추가 보완)

- (수문조사) 인근 기존 관측소 및 수문자료조사, 수위 관측, 유량/유사량 /수질 측정 등(조사방법 : ISO 748 적용)

| 조 사 항 목 | 단위 | 수량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강우 및 유량자료 조사 | 식 | 1 | |
| 2. 수위 관측 | | | |
| - 관측소 설치 및 시험 | 개소 | 1 | |
| - 수위 관측 | 개월 | 6 | 시간별 관측 |
| 3. 유량 측정 | 회 | 6 | |
| - 평수기 | 회 | 2 | 평수량 2회 |
| - 홍수기 | 회 | 4 | 홍수사상 4회 (각 2번 측정) |
| 4. 유사량 측정 | 회 | 6 | 홍수기 4회, 평수기 2회 (입도분석 및 경도시험 포함) |
| 5. 수질 측정 | 회 | 3 | 2개월 1회 |

- (지반조사) 지표지질조사, 지구물리탐사, 시추조사, 재료원조사 등

| 조 사 항 목 | 단위 | 수량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1. 지표지질조사 | km ² | 2.0 | 댐구간 1.0km ² 수로 0.5km ² 발전소구간 0.5km ² |
| 2. 지구물리탐사 | | | |
| - 전기비저항탐사 | km | 1.0 | 댐축, 수로 |
| - 탄성파탐사 | km | 1.0 | 댐축, 수로, 절토사면, 펜스탁 |
| 3. 시추조사 | | | 위치변경 등 필요시 |
| - 댐 | 공 | 2 | |
| - 발전소 | 공 | 1 | |
| 4. 재료원시험(골재) | 회 | 3 | 비중/흡수율, 단위중량, 알칼리 잠재반응 등 |
| 5. 재료원/사토장 조사 | 개소 | 3 | 각 3개소 |

- (측량조사) 지형현황측량, 하천 중·횡단 측량, 댐 노선 측량

| 조사 항목 | 단위 | 수량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지형현황측량 | 식 | 1 | 댐 및 발전소 부지 (축척 1:1,000) |
| 2. 하천 중·횡단 측량 | km | 1 | 발전소 상하류 1.0km |

- 용역수행사는 댐 지점에 1개소, 발전소 지점 인근 1개소 등 총 2개소 이상의 기준점 표석을 매설하여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- 측량조사 성과물은 보고서 및 지형측량 지형도, 관측기록부, 망도, 점의조서, 사진첩 등
- 용역수행사는 측량 수행 전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KIND 승인 후 실시, 현장조사 결과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KIND와 협의하여야 함.

□ 기술 타당성 검토 (기존 보고서 및 대안 검토)

- 수리·수문 분석 : 유역특성, 장기유출량, 설계홍수량, 퇴사량, 수리계산 등
- 최적 개발규모 검토 : 발전방식, 수력발전 규모, 댐 위치 및 형식 검토, 댐 건설에 따른 영향(수리, 환경) 검토 등
- 발전량 검토 : 시설용량 및 사용수량 검토, 손실수두, 연간발전량 산정 및 저수지 운영모의 등
- 주요 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
 - 진입도로 및 공사용도로 / 부대공사
 - 유수전환 / 댐 및 여수로 / 발전소 및 변전소
 - 기전설비 : 주기기 및 보조기기, 수문, 제어 통신설비, 소화설비 등
 - 송전선로 배치계획 및 적정성
 - 지진해석 : 설계지진계수 산정

□ 시설물 대안 검토

- 기존 보고서(DED 등) 댐 및 발전소 위치의 적정성 검토
- 디디피오 강 내 사업성이 높은 사업대상지(댐 위치 등) 신규 검토
- 경쟁력 있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별도 Layout 대안 제시

□ 공정계획 검토

- 주요 공정별 공사수행방법 및 공정계획 수립
- 연차별 건설 및 사업관리계획의 수립

- 댐, 발전소 시설의 물량산출 및 수량산출서 작성
-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한 주요 단가산정(재료비, 노무비, 장비비 등)
- 적정 사업기간/사업비 산정
 - (소요사업비) 사업내용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, 사업비에는 공사비, 설계용역비, 조사비, 감리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을 포함하여 산출

3) O&M 계획 수립

- 전력 발전량의 변동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
-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계획 수립
-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산출 (유지관리 기자재 수량 포함)
-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검토

나. 재무분야

1) 재무모델 작성

-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 및 현지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세제가 반영된 초기 재무모델(영문) 작성
- 예비비, Escalation 등을 감안한 총투자비 산정
- 모델 기본가정 적정성 검토(금리, 운영비, 이용률, 물가변동, Tariff, EPC 및 O&M 비용, 보험료, 환율, 할인율, 감가상각 등)
-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무모델 작성

2) 적정 자원조달계획 수립

- 자기자본 투입계획, 타인자본 조달계획, 예비자원 조달계획
- 환율변동과 환전 리스크 검토 및 헷지 방안

- 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(국제기구 보증 포함) 활용방안
- MDB, ECA 등 정책금융 및 상업은행 조달 가능성 및 조달방안
- PRI(Political Risk Insurance) 금융연계 필요성 및 계획
- 해당국 내 PPP 사업 Project Financing 사례 검토

3) 경제성 및 재무분석

- 재무모델 수립을 통한 NPV, IRR 등 경제성 분석
- 재무 할인율 추정 및 현금 흐름 할인 분석
- SPC 수익성 지표 분석(NPV, ROE, ROI, 회수 기간 등)
- SPC 안정성 지표 분석(DSCR, 현금과부족 발생 여부 등)
- SPC 추정재무제표 작성

4) 사업위험도 분석

- 투자 회수 전략 수립 시 환율변동에 따른 헷지 방안 수립
- 계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사업주 리스크 대응방안 검토
- 리스크 조치계획 수립

5)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

- Tariff, 공사비, 대출이자율, 환율변동 등 주요 Risk에 대한 민감도 분석
- 자원조달 구조 변경, 대출 상환방식 변형 등 시나리오 분석

다. 법률분야

1) 사업대상국의 제반 법률 및 제도 분석

수력발전사업(소수력 포함)에 대해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, 권한, 제약 등 투자자 관점에서의 투자 관련 법률 검토

외국인투자법, 관련 제도/정책(정부 고시) 등 검토

투자형태에 따른 세제 검토

○ 공사 및 전기 판매 관련 매입/매출 부가세 및 면세사항

○ 법인 설립 절차에 따른 세금

○ 법인세, 감가상각, 부가세, 원천징수, 이월결손금, 연결납세, 인지세,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, 사회보장세, 부동산세 등

※ 과업수행자는 상기에 명시된 세금항목 등을 포함하여 재무모델에 반영해야 함

법인 설립 절차 검토 - 관련 법률 및 인허가 검토

현지 인력 고용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

기존 투자사업의 주요 계약 적정성 검토 및 법률적 위험요인 도출·분석

○ 유사사업 계약자료 확보 및 검토 (자산매매계약, 운영관리계약 등)

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(국제기구 보증 포함) 검토

PPP 사업 법적근거 및 기존 계약사례 검토, Unsolicited PPP Proposal 절차 등 민간제안사업 추진방안 검토

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률 검토, 법률적 위험 검토

○ 에너지부 (Department of Energy) 사업추진 승인 및 허가 등

○ 물 사용 인허가 (Water permit 등)

○ 환경 인허가 (Discharge permit, Tree Cutting Permit, Special Land Use Permit, Reforestation and forest management arrangement, ECC (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등 DENR 관련 인허가

- 지방정부 인허가 (지방정부 동의절차, Resettlement Action Plan 등)
 - 주민 보상 관련 (용지·지장물·주민 보상 및 거주민 이전 등의 절차, 관련 문제점, 대응 방안, 비용 검토, NCIP permit 등)
 - 현지 사업주 기취득 인허가 및 향후 필요한 인허가 검토 (관련 법령 등)
- ※ 과업수행자는 상기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수력발전사업 관련 추진절차 및 추진절차별 인허가 사항을 검토 및 제출해야 함

□ 최적 사업구조에 관한 법률 검토

-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, 외국자본은 최대 40% 제한, 최대 25년 계약(+25년 연장) 명시하였으나, 2022년 재생에너지법 개정 에 따르면, 재생에너지사업은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명시
 - 외국인 지분제한 해제의 명확한 정의 검토(용수공급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, 댐 발전형식(Run of river, Reservoir)에 따른 적용 여부)
 - 40% 지분제한을 고려하여 한국 사업주가 SPC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 검토 및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사업구조 검토

□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

- 분야별 리스크 Matrix 작성 (Political Risk, Currency Risk 등)
 - 분야별 리스크 대응방안 검토
 - 리스크 해소방안 실행 가능성 / 실행방법
 - 리스크 해소방안이 재무모델에 미치는 영향
- ※ 과업수행자는 상기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기타 발생 가능한 리스크 해소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□ 사회환경영향 검토

- (관련 기준) 현지기준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MDB 기준 조사
- (이주 및 보상계획) 토지보상, 이주 등 지원규모 및 비용규모 산출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과업 수행 비용의 산정, 집행 및 정산은 우리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우리 공사에서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.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- 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<사업주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

※ <사업주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**전문가 자문**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1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□ **현지조사**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**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**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**착수보고**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□ **중간보고**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(5부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

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 보고서/재무모델/참고자료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□ 과업성과품 제출목록

- 제출목록 및 제출시기

| 제출시기 | 제출자료 | 제출부수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| 착수보고서 | 5부 |
|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| 중간보고서 | 5부 |
|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| 최종보고서 (요약보고서, 설계도면, 원본파일 포함) | 20부 |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칙 제54조(용역업체 발주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 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| 항목 |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4개월 | 5개월 | 6개월 | 비고 |
|--|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|
| 1. 자료 수집 및 검토 (DED 보고서 포함) | | ■ | | | | | | |
| 2. 사업환경 분석 (현장 조사 포함) | | ■ | ■ | | | | | |
| 3. 용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| | | ■ | ■ | ■ | | | |
| 4. 기술/재무/법률 검토 (현지법률자문, 지반조사 등 외부용역 시행) | | | ■ | ■ | ■ | ■ | | |
| 5. 대안 검토 및 사업비 도출 | | | | | ■ | ■ | ■ | |
| 6. 기술/재무/법률 타당성 검토(재무모델 작성) | | | | | ■ | ■ | ■ | |
| 7. 성과품 작성 | | | | | ■ | ■ | ■ | |
| 보고회 | | 착수 보고 | | | 중간 보고 | | 최종 보고 | |
| 과업 진도율 | 당기 | 10 | 20 | 20 | 20 | 20 | 10 | |
| | 누적 | 10 | 30 | 50 | 70 | 90 | 100 | |